

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

신고서
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			
신고인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
	③ 성명(대표자)	④ 생년월일				
	⑤ 주소(사업장)			(전화번호:)		
사업장 규모	[] 집단급식소: 1일평균 총급식인원		명			
	[] 음식점: 사업장 면적		㎡			
	[] 대규모점포: 사업장 면적		㎡			
	[] 농수산물도매시장(공판장·유통센터): 사업장 면적		㎡			
	[] 호텔·콘도: 객실 수		실			
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						
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		kg/월 (1일 kg)				
⑧ 발생억제계획						
⑨ 자가처리계획	⑩ 자가처리(가열·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)			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		
	처리방법	처리능력 (kg/일)	설치 신고일	처리량 (kg/일)	부산물 발생량 (kg/일)	처리방법
⑫ 자가재활용계획	재활용량(kg/월)		재활용방법		재활용장소	
	재활용량 (kg/일)	위탁계약 비용 (원/kg)	위탁 업소명	업종	재활용 방법	위탁업소 주소·전화
⑬ 위탁재활용계획						
⑭ 변경사항	변경 전			변경 후		
⑮ 변경사유			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제1호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

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 변경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고를 하려는 경우: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(위탁하여 수집·운반 또는 재 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2.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.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.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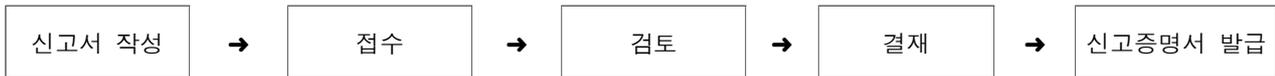
작성방법

-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.
-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.
(예시)

집단급식소	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,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,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
음식점 호텔·콘도 등	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
대규모점포	소포장 농·수·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
농수산물도매시장 (공판장·유통센터)	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
공통	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

-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"처리방법"은 "1)가열에 의한 건조"나 "2)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, 사료화 또는 부숙"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.
-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"처리능력"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. 다만,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.
-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"처리량"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.
-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,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.
-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 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.
-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 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, 위탁계약비용이 명확하게 적힌 계약서를 제출합니다.
-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, ⑭ 및 ⑮란만 적고,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
처리절차



신고인

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